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80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김교홍·정점식·김준형
최혁진·문진석·김 현
김남희·주철현·박지원
전진숙·양문석·박충권
김승수·백혜련·정진욱
박 정·양부남·소병훈
박찬대·김종민·박정현
허성무·이해식·임이자
이재정·서천호·곽규택
김준혁·조계원·송옥주
김대식·윤재옥·백종현
최민희·이정현·어기구
신동욱·박해철·박정하
김미애·김정재·최수진
윤종균·송언석·김도읍
한지아·조승래·서삼석
최형두·강선영·박균택
채현일·김영배·서영교
김석기·김용태·조배숙
조은희·김승원·정태호
윤준병·정희용·이상희

강대식 · 배준영 · 이만희
김태선 · 정일영 · 윤종오
전종덕 · 김소희 · 김기웅
한창민 · 손명수 · 서일준
김종양 · 권향엽 · 곽상언
고민정 · 강선우 · 김문수
이재관 · 허영 · 이광희
추미애 · 이성윤 · 이병진
박선원 · 허종식 · 한병도
이성권 · 김동아 · 강경숙
이훈기 · 김상욱 · 정춘생
손솔 · 오세희 · 김영호
김재원 · 박희승 · 용혜인
문대림 · 김현정 · 이상식
김주영 · 민홍철 · 이기현
권칠승 · 임오경 · 이주희
백선희 · 조승환 · 이수진
이준석 · 조정식 · 진성준
정준호 · 임호선 · 박수현
장동혁 · 노종면 · 송기현
이해민 · 차지호 · 김영진
천하람 의원(1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8명

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실행, 자살 고위험군 집중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살예방기금

제19조의5(자살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10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9조의6(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사례관리 사업
2.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의 개발 및 실행
3.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구축 및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4.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지원
5. 자살예방 관련 민간단체 및 시민참여 기반 사업 지원
6.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예방 연구·개발 지원
7.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및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 관련 사업 지원

제19조의7(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4장의2 자살예방기금</u> <u>제19조의5(자살예방기금의 설치</u> <u>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u> <u>자살예방사업을 안정적이고 지</u> <u>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u> <u>살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u> <u>다)을 설치한다.</u> <u>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u> <u>으로 조성한다.</u> <u>1. 국가의 출연금</u> <u>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u> <u>기부금</u> <u>3. 기금의 운용 수익금</u> <u>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u> <u>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u> <u>수익금</u> <u>5.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u> <u>00분의 10</u> <u>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u> <u>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u> <u>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u> <u>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u> <u>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u>

<신 설>

<신 설>

협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

제19조의6(기금의 사용 용도) 기
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
용한다.

1.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사례관리 사업
2.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의
개발 및 실행
3.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구축
및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4.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
· 사회적 지원
5. 자살예방 관련 민간단체 및
시민참여 기반 사업 지원
6.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예방 연구·개발 지원
7.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및 자
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 관련
사업 지원

제19조의7(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 운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